

韓國教育課程評價院法案

議案	
番號	

提出年月日：1997. 6. .
提出者：政 府

提案理由

學力評價機能을 담당하던 國立教育評價院이 1997年 12月 31日 廢止되게 됨에 따라 同 評價院에서 담당하는 大學修學能力試驗 등 全國單位の 學力評價試驗을 실시할 代替機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教育課程의 研究·開發과 學業成就의 評價를 각각 다른 機關에서 分離하여 수행함에 따라 나타난 問題點을 해소하기 위하여 第1次 教育改革方案(1995年 5月 31日 발표)에서 위의 두 機能을 統合하여 하나의 機關에서 全擔하도록 하는 方針을 확정함에 따라 教育課程의 研究·開發과 學業成就의 評價를 統合하여 운영함으로써 初·中等教育의 改革을 뒷받침함과 아울러 學生·學父母 및 教師 등에게 信賴性 높고 多樣한 教育情報를 제공하기 위하여 韓國教育課程評價院을 設立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 가. 韓國教育課程評價院은 高等學校이하 各級學校의 教育課程을 研究·開發하고 各種 學力評價를 실시함을 目的으로 함(案 第 1條).
- 나. 韓國教育課程評價院은 高等學校이하 各級學校 教育課程의 研究·開發, 學業成就基準 및 成就度評價道具의 開發, 全國單位의 學力評價試驗의 관리, 教育課程 및 學力評價制度의 發展 方案 研究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案 第6條).
- 다. 韓國教育課程評價院에 任員으로 理事長 및 院長을 포함한 11人이내의 理事와 監事 1人을 두도록 하고, 理事長·院長 및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監事の 任期는 2年으로 정함(案 第7條).
- 라. 韓國教育課程評價院의 運營財源은 政府의 出捐金과 學力評價의 施行에 따른 收益金 등으로 정함(案 第12條).
- 마. 韓國教育課程評價院은 그 目的의 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國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 등에 대하여 人力의 派遣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案 第17條).
- 바. 全國單位의 學力評價試驗施行機關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韓國教育課程評價院의 任·職員과 院長의 위촉 또는

委託을 받아 學力評價業務등을 수행하는 者등은 그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嚴守할 義務를 지며,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公務員으로 보도록 함(案 第19條 및 第23條).

공백

韓國教育課程評價院法案

第1條(目的) 이 法은 韓國教育課程評價院을 設立하여 高等學校이하 各級學校의 教育課程을 研究·開發하고 各種 學力評價를 實施함으로써 學校教育의 질적 향상 및 國家教育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法人) 韓國教育課程評價院(이하 “評價院”이라 한다)은 法人으로 한다.

第3條(設立) ①評價院은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事項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目的
2. 명칭
3. 主된 事務所
4. 任員의 姓名 및 住所
5. 公告의 방법

③設立登記외의 登記에 관하여는 民法중 財團法人의 登記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4條(事務所) 評價院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한다.

第5條(定款) ①評價院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的
2. 명칭
3.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4. 組織에 관한 사항
5. 業務 및 그 執行에 관한 사항
6. 財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7.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8. 理事會에 관한 사항
9.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公告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内部規程의 制定 및 改廢에 관한 사항

②評價院은 定款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教育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6條(事業) 評價院은 第1條의 規定에 의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행한다.

1. 高等學校이하 各級學校 教育課程의 研究·開發 및 評價
2. 高等學校이하 各級學校 教科用 圖書의 開發 및 檢·認定業務의 지원
3. 高等學校이하 各級學校 學生을 대상으로 하는 學業成就基準의

研究·開發

4. 學業成就度評價道具의 開發 및 問題銀行體制의 構築
5. 각종 教育 및 心理檢査의 研究·開發
6. 全國的으로 실시하는 學力評價試驗의 出題·施行 및 採點
7. 教育課程 및 學力評價制度 發展方案의 研究 및 外國과의 比較
8. 教育課程 및 學力評價에 관한 情報의 제공 및 資料의 發刊과 이에 따른 收益事業
9. 기타 法令에 의하여 委託되거나 教育部長官으로부터 委託받은 事業

第7條(任員) ①評價院에 理事長 및 院長 각 1人을 포함한 11人 이내의 理事와 監事 1人을 둔다.

②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③理事長·理事 및 監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任한다.

④院長을 제외한 任員은 非常勤으로 한다.

⑤監事는 評價院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第8條(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評價院의 任員이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의 國民이 아닌 者

2.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第9條(理事會) ①評價院의 業務에 관한 重要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評價院에 理事會를 둔다.

②理事會는 理事長 및 院長을 포함한 理事로 구성한다.

③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며, 그 議長이 된다.

④理事長은 院長을 겸할 수 없다.

⑤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⑥理事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第10條(院長등) ①評價院에 院長 1人と 職員을 둔다.

②院長은 評價院을 代表하며, 그 業務를 統轄하고, 所屬職員을 指揮·監督한다.

③院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중에서 選任하되, 教育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院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者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11條(職員의 任免) 院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評價院의 職員을 任免한다.

第12條(運營財源) 評價院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設立·운영한다.

1. 政府의 出捐金 및 補助金과 地方自治團體教育費特別會計로부터의 補助金
2. 教育課程 및 學力評價에 관한 情報의 제공 및 資料의 發刊 등에 따른 使用料·手數料 및 收益金
3. 기타 收入金

第13條(出捐金) ①政府는 評價院의 設立 및 运营에 소요되는 經費에

충당하기 위하여 評價院에 필요한 出捐金을 豫算의 범위안에서 交付할 수 있다.

② 評價院은 事業年度마다 다음 年度의 出捐金豫算要求書를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教育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14條(國有財産의 讓與) 政府는 評價院의 設立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國有財産을 評價院에 讓與할 수 있다.

第15條(事業年度) 評價院의 事業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第16條(事業計劃書의 제출등) ① 評價院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年度別 事業計劃書 및 豫算書를 작성하여 教育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評價院은 每 事業年度의 事業實績과 教育部長官이 지정하는 公認會計士의 檢査를 받은 事業年度別 歲入·歲出決算書를 다음 年度 3月 31日까지 教育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17條(人力的 派遣要請) 評價院은 그 目的의 달성과 専門성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教育部長官을 거쳐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教育機關·研究機關 또는 公共團體에 대하여 필요한 人力的 派遣을 요청할 수 있다.

第18條(是正要求등) ① 教育部長官은 필요한 경우 評價院에 대하여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業務 및 會計에 관한 사항을 調査하게 하거나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教育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의 결과 評價院의 業務 또는 會計에 違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院長에게 是正의 요구 등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第19條(秘密嚴守의 義務) 評價院의 任·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院長의 위촉 또는 委託을 받아 評價院의 業務를 수행하는 者 또는 수행하였던 者도 또한 같다.

第20條(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評價院이 아닌 者는 韓國教育課程評價院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21條(民法의 準用) 評價院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22條(罰則) 第19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3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評價院의 任·職員 또는 院長의 위촉 또는 委託을 받아 評價院의 業務를 수행하는 者는 刑法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24條(過怠料) 第20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設立準備) ①教育部長官은 이 法 施行日전에 15人이내의 設立 委員을 위촉하여 評價院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設立委員은 定款을 작성하여 教育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設立당시의 評價院의 院長은 教育部長官이 任命한다.

④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連名으로 評價院의 設立登記를 한 후 院長에게 事務를 引繼하여야 한다.

⑤設立委員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공백